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63

발의연월일: 2021. 10. 1.

발 의 자:김윤덕·안민석·박상혁

한병도 • 이학영 • 이광재

이수진 · 이원택 · 김병욱

정성호 · 김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 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시공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정비사업 지연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되고 있고, 시공자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도 시공자의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임에도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다른 안건에 대한 총회와 동

일하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정비사업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 45조제7항).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 전단 중 "10분의 1"을 "5분의 1"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를 "보수 및 선임방법에"로 한다.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7항 단서 중 "창립총회"를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 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및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7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 ③ (생 략)	및 해임)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	4
도 불구하고 조합원 <u>10분의 1</u>	<u>5분의 1</u>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	
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	
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	
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	
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생 략)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2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	
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u>보수·선임방법·</u>	<u>보수 및 선임</u>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u>방법에</u>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 ⑤ (생 략)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⑥ 저 (생 략)

⑦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 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 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45조(총회의 의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공
자의 선정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
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
립총회

⑧・⑨ (생략)